

중소기업을 위한 '절세전략 Tip'

글 / 조상윤(새별회계법인 회계사)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경영안정, 창업지원, 기술개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안정을 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제도는 각 세법별로 특례조항이 산재되어 있고, 잣은 개정으로 각 기업에 맞는 조세지원제도를 이해하고 절세전략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 세법 전반에 걸쳐있는 조세지원제도 중 연말에 꼭 체크해 볼 만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등록세와 재산세 감면하는 창업지원

중소기업 창업시 등록세와 취득세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창업 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이 경우 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및 임대 하는 경우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항에서는 65세 이상의 부모 등으로부터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30억 원 한도)을 중여하는 경우 중여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하고 있어 창업자금을 중여 받는 경우 중여세액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표1〉 창업지원 절세내용

구 분	관 련 법	혜 택 내 용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혜택: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의 50%감면
취득세 등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고용창출형 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혜택: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창업 후 2년 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단, 취득 후 2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
재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혜택: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단, 취득후 2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

법인세 혜택을 주는 투자촉진지원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투자 및 연구활동에 대해 법인세 혜택을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투자시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동법 제24조에서는 제품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는 무주택중업원에 대한 임대용 주택, 근로자 기숙사용 부동산 및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

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지방세법 제276조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산업기술단지 내에서 일정요건의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50%를 경감 또는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표2〉 투자촉진지원 절세내용

구 분	관 련 법	혜 택 내 용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다음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자산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혜택 : 투자금액의 3% 상당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기반·자동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전사적 기업지원관리설비(ERP) - 전자상거래설비 등 ■ 혜택 : 투자금액의 7%(일반기업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단, 유통주점, 도박장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 ■ 혜택 : 다음 둘 중 회사가 선택한 금액을 지출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당해 연도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업종에 대한 사업안정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 중 아래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일정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납부할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 감면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공연산업 등

■ 감면비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당해 연도 법인세 10%상당액
-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감면대상업종 중 위 10%감면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당해 연도 법인세 20%상당액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 중 위 10%감면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당해 연도 법인세 30%상당액
-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이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위 10%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당해 연도 법인세 5%상당액
-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당해 연도 법인세 10%상당액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 중 위 10%감면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당해 연도 법인세 15%상당액

절세 전략 수립시 고려할 사항

중소기업이 위와 같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우선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 및 재정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최저한세라고 한다. 최저한세는 각종 감면후의 세액이 감면을 받기 전 과세표준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을 배제한다. 이것 역시 일반기업이 13%~15%인 반면 중소기업은 10%로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과세기간 종료 후 3월이내 법인세 신고시 함께 납부해야 한다.